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51호)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82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18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7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Ⅰ. 개요 ····· 1

【김병기의원안】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임호선의원안】

1. 제안경위 ·····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백선희의원안】

1. 제안경위 ·····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

【민형배의원안】

1. 제안경위 ·····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

Ⅱ. 검토의견 ····· 7

1.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김병기의원안 제14조의2, 임호선의원안 제61조제2항, 백선희의원안 제14조의3, 민형배의원안 제14조의2) ····· 7

2.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신설(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 19

3.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근거 신설(민형배의원안) ····· 24

Ⅰ. 개　요

【김병기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0.

(3) 회부연월일 : 2025.　3.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임호선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7.

(3) 회부연월일 : 2025. 3.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등이 특별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

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백선희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15.

(3) 회부연월일 : 2025. 4.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민형배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21.

(3) 회부연월일 : 2025.　4.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2 등).

Ⅱ. 검토의견

1.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김병기의원안 제14조의2, 임호선의원안 제61조제2항, 백선희의원안 제14조의3, 민형배의원안 제14조의2)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이 재난현장에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김병기의원안), ②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유가족통합지원센터”(백선희의원안·민형배의원안), ③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임호선의원안)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상황 전달, 사망자·부상자·실종자 신원 확인 및 비상물품 전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현 행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하여 재난현장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75조의5에 따른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두는 때에는 유가족전담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유가족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신 설>			제14조의3(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	

현 행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지원 2.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절차 지원 3. 재난 상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4. 심리상담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선포된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현행과 같음)

현 행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큰 규모의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수습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대책본부 내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률, 금융 등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사항을 한 곳에서 안내·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음.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규모의 재난에 대해 지역대책본부 내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에서 설치하는 경우 '중앙합동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울산·경북·경남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였음.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사례(2024년 이후)>

연번	재난명 (운영기간)	피해 규모	참여기관	주요 실적
1	서천 특화시장 화재 (1.24.~3.20.)	점포 3개동 227개소 소실	20개 기관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피해접수 264건, 상담 626건, 재해소상공인 확인 발급 138건
2	화성 공장 화재 (6.24.~11.5.)	31명 (사망 23, 부상 8)	14개 기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출입국외국인청 등)	상담 124건, 통역 176건, 의료 310건, 법률 42건, 설명회 9회 등
3	창원 호우 피해 (9.23.~10.15.)	주택 옹벽 전도	3개 기관 (마산동부경찰서, 마산소방서 등)	임시숙박시설 및 식비 지원 43명, 친인척집 이용 구호비 지원 34명 등
4	인천 서구 공장 화재 (10.23.~11.8.)	76개동 (45개 업체)	7개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등)	융자 53건, 납세유예 7건, 법률 5건, 국민연금 5건, 기타 3건
5	안성·용인·이천 대설 피해 (12.3.~12.31.)	(안성) 6,993건/1,122억 (용인) 1,644건/353억 (이천) 2,741건/316억	9개 기관 (농협손해보험, 신용보증재단, 세무서 등)	융자, 축사 재·개축 등 상담 624건
6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2024.12.29.~ 2025.1.19.) * 중앙합동지원센터	181명 (사망 179, 부상 2)	36개 기관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사고수습 지원 164건, 유가족 지원 504건, 법률·보험 지원 563건, 언론 대응 32건
7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2025.3.27.~ 2025.5.18.) * 중앙합동지원센터	183명 (사망 31, 부상 156) 산림피해 104천 ha	76개 기관 (산림청, 금융위, 한전, 법률구조공단, 국토정보공사, 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현장 조치 민원 4,953건 (경북 4,576, 경남 377) (이재민구호 474, 시설주거 1,964, 영농 317, 지원금 436, 융자·보험·법률 712, 기타 1,050)
8	광명 공사장 붕괴사고 (2025.4.15.~)	2명 (사망1, 부상1)	6개 기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 포스코 등)	현장 조치 민원 323건 (안전점검 28, 복구지원 73, 회복지원 222) ※ '25.5.12.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지역대책본부 및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1],

이에 따라 2025년 3월 행정안전부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에 지역대책본부 내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6조의2(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시・군・구대책본부에 시・군・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군・구지원센터의 장은 시・군・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시・군・구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군・구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제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지원센터를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0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시・군・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시・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대책본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합동지원센터'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재난 피해를 통합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각 개정안은 설치·운영 주체를 모두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칭,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각기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주체	중앙대책본부장			
명칭	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	
지원 범위	·재난 수습상황 전달 ·사망자·부상자·실종자 신원확인 ·비상물품전달 등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절차 지원 ·재난 수습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사망자 신원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첫째, 명칭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통합지원센터’, 임호선의원안은 ‘현장지원센터’, 백선희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점과 현행법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명칭을 고려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에 ‘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될 경우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두 차례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에서 ‘중앙

합동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명칭을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수정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와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임호선의원안은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백선희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임시주거시설 및 식사 지원 등 직접적인 구호 활동 외에도 금융, 보험, 법률상담, 통역,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사망자가 아닌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원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김병기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확인, 재난수습 상

황전달, 비상물품전달, 지원금 신청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신설(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김병기의원안) 또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민형배의원안)을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현 행	김병기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신 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 피해 및 회복 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복구·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일상회복 지원의 사각지대 및 피해 미회복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주요 내용>

대분류	중분류	주요 조사내용
피해경험	재난경험	재난유형, 재난피해 인식, 재난손실 규모(인명피해·재산손실)
재난피해·회복현황	신체	재난 전·후 질병·질환 여부, 건강상태 인식, 수면의 질, 음주·흡연
	심리	외상 후 스트레스(PTS), 우울, 불안, 회복탄력성, 삶의 질
	사회	사회적지지, 공동체·사회 인식, 언론보도 인식
	경제	경제상황변화(자산, 수입 등), 경제적 취약성, 경제전망
국가서비스	정책인식	국가지원만족도, 개별 구호지원 만족도, 지원 정책·제도 인식 및 요구

* 자료: 행정안전부

실태조사는 최근 3년 내 발생한 대규모 재난의 피해자 및 재난심리 회복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약 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연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현황>

구분	조사연도	조사참여자	조사기간	비 고
1	2024년	직접 피해자 3,016명 재난심리지원 이용자 600명	8.6. ~ 11.4.(91일)	심리지원 만족도 조사 수행 집중호우로 기간 연장
2	2023년	직접 피해자 3,009명	6.19. ~ 8.11.(54일)	-
3	2022년	직접 피해자 3,016명	8.8 ~ 9.16.(40일)	-
4	2021년	직접 피해자 3,010명, 소상공인(코로나19) 502명	8.20. ~ 10.4.(46일)	코로나19 이슈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조사
5	2020년	직접 피해자 2,632명 간접 피해자 1,069명	9.23. ~ 11.6.(45일)	간접피해자(미피해 재난경험자)를 포함

*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대상 주요 재난 현황>

구분	재난명	재난 연도	발생일자	조사연도					
				’20	’21	’22	’23	’24	’25
1	11.26.~28. 대설·강풍·풍랑	2024	11.26.~11.28.						O
2	9.19.~21. 호우		9.19.~9.21.						O
3	7.8.~19. 호우		7.8.~7.19.						O
4	8.9.~11. 제6호 태풍 카눈	2023	8.9.~8.11.					O	O
5	6.27.~27. 호우 피해		6.27.~7.27.					O	O
6	’23년 4월 산불		4.2.~4.4. / 4.11.					O	O
7	태풍 힌남노	2022	9.5~9.6				O	O	O
8	8.8~17 집중호우		8.8~8.17				O	O	O
9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3.4~3.13			O	O	O	O
10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2021	8.23.~8.24.			O	O	O	
11	7월 집중호우		7.5~7.8.			O	O	O	
12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2020	9.2~9.3, 9.7~9.8		O	O	O		
13	8월 한반도 집중호우		7.28~8.11		O	O	O		
14	제18호 태풍 미탁	2019	10.2.~10.3.	O	O	O			
15	제13호 태풍 링링		9.6.~9.7.	O	O	O			
16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4.4.~4.5.	O	O	O			
17	제25호 태풍 콩레이	2018	10.4.~10.7.	O	O				
18	제19호 태풍 솔릭 및 호우		8.22.~9.1.	O	O				
19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및 호우		6.26.~7.4.	O	O				
20	11.15 (포항)지진	2017	11.15.	O					
21	7월 호우피해		7.2~11., 7.14~16	O					
22	코로나19	2019	-		O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심리 장기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고도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기반의 재난피해자 회복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의무만 규정[2]하고 있을 뿐, 재난피해 회복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재난피해의 회복수준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관한 김병기의원안과 민형배의원안의 차이점 및 자료 요청 권한 신설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태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로, 민형배의원안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의 복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목적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지원’에 국한시키기 보다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둘째,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는 재난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마련 후 법정 조사업무로 추진하게 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관련자료를 추가 분석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수준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신원확인, 피해 전후의 경제·사회·보건·심리상황 및 피해지원 내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조사데이터의 구축·분석·관리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서 조사 업무 수행 및 결과 발표를 대행[3]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수정의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근거 신설(민형배의원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난 수습을 위한 총괄·조정 업무를 위해 지역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에서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4]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설치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에 피해 가족의 유형(사망·부상·실종)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장례 및 치료, 수색상황 안내, 민원 접수·조치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히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신속한 관련 업무 지원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족전담공무원이 유가족에게 ①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②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한 사항, ③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유가족전담공무원”의 법제화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유가족전담공무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① 재난 발생 시 기존 공무원 인력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② 기존 인력과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추가로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유가족전담공무원을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행 예정인 법률의 규정과 그 효과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25일에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및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역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어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임[5].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공무원 등을 지역대책본부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유가족전담공무원을 기존 공무원 인력이 아닌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를 살펴보면, 재난은 그 특성상 발생 시기와 빈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별도의 상근 인력으로 유지할 경우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유가족전담 인력을 두는 것은 공무원 정원 배정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

5) <2025. 10. 2. 시행 예정 조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④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아니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않으며, 공무원 정원 관리 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이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②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6]하고 있는데,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미 해당 매뉴얼 및 업무 편람[7] 등에 장례식장 전담 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근무 요령 등 유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매뉴얼에서 유가족전담공무원 행동매뉴얼을 별도로 분리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재난의 수습·관리에 관한 업무의 체계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

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